

질병 수퍼 네트워크 사업팀 자체 운영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BK21 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기반으로 질병 수퍼 네트워크 사업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질병 수퍼 네트워크 사업팀에 적용하며, 자체 운영 규정 외에 모든 사항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제 2 장 참여대학원생 지침

제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취업·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제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등의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팀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2장 제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제 3 장 참여교수 지침

제1조(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① 사업팀에 참여하는 교수(이하 참여교수라고 한다.)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임용되어 해당 대학에서 근무기간을 전일제(全日制)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다.

② 참여교수가 1년 이내의 국내외 기관 파견중이거나,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사업팀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 교수의 사업팀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사업팀에 참여할 수 없다.

제2조(참여교수의 변경 및 예외사유) ① 사업팀장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팀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팀에서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에는 해당 참여교수는 지침 제1조에서 정한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④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늘릴 경우, 사업팀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요건을 검증하여야 하며,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실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팀의 참여교수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 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단과의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장 참여교수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침

제1조(성과급 지급 기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참여교수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연도별 사업 종료 약 1개월 전에 전체 참여교수의 당해연도 연구, 교육, 산학협력 및 사업팀에 대한 봉사 실적을 평가한다.

② 책정된 국고 및 교비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교수의 사업팀 기여도를 평가하여 1인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③ 사업팀 기여도에 대한 참여 교수의 평가 시 사업팀장의 평가 점수 비율을 최소 30% 반영 하도록 한다.

④ 성과급 평가 항목 및 배점은 <표3>에 따른다.

⑤ 4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5명에게 차등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순위	1	2	3	4	5
비율	26%	23%	20%	17%	14%

[표]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배점)	실적 기간
참여교수 실적 (40점)	참여 교수의 연구 실적 (40점) : SCI논문 수	최근 1년
산학 협력 실적 (30점)	특허 출원 실적(10점)	최근 1년
	기술 이전 실적(10점) - 상(10)/중(8)/하(6)	최근 1년
	사업화 실적(10점)	최근 1년
기여도 평가 (30점)	사업단 기여도 - 사업단장 평가 총점 중 30% 반영	
총점	100점	

제 5 장 신진연구인력 활용 지침

제1조(신진연구인력) ① 사업팀장은 박사후연구원(이하 “신진연구인력”이라 한다)을 채용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해당 대학의 임용 규정 및 기준 등을 준용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연구원은 소속 사업팀에서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팀장은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25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박사후연구원 중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는 3분의 2 이내로 한다. 다만 지원 인원이 3명 미만이거나, 박사후연구원이 자교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사업단에서 연구에 전념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4. 박사후연구원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 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신진연구인력 지원은 1년을 기본으로 하고, 그 기간 동안 논문실적(IF 5점)이 있으면 1년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단, 논문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추가 지원여부를 결정 한다.

⑤ 박사후연구원의 채용기준은 최근 5년간 논문발표 실적이 주저자 impact factor 합이 6이상이어야 한다. 단, 지원 자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전문분야의 특별한 기술이나 역량이 인정되어 지도교수의 추천이 있는 경우 사업팀장이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팀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강의를 할 수 있다.

제 6 장 국제화경비 운영 지침

제1조(단기해외연수) ① 단기해외연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사업팀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국 이상 참여
 2. 구두발표 총 논문이 20건 이상
 3.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
(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이상)
- ②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2. 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
(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신진연구인력
- ③ 해외 기관으로의 단기연수는 해외 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과정 참여, 현지 연구 수행을 위한 경비로 집행 가능하다. 대상 기관은 MOU 체결 또는 초청장을 받은 대상 기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 ④ 체재비는 15일 이내에 한해 지원 될 수 있다.
- ⑤ 지원 금액은 항공료의 실제소요 금액 및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로, 항공료는 영수증 청구 금액만큼,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 및 보험료는 한국과학기술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⑥ 학회 참가 전 지원 신청서 및 국제학회 인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학회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또는 출입국증명서)을 제출해야한다.

제2조(장기해외연수) ① 사업팀에서 규정하는 장기해외연수는 국제간의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또는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15일 초과연수 활동을 말한다.

- ② 지원대상은 참여대학원생,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포함된다.
- ③ 대상 기관은 MOU 체결 또는 초청장을 받은 대상 기관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 ④ 지원항목은 항공료(실비기준), 체제비(일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 한국과학기술원 여비 기준이며 1인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고 미국 3주 체제비 약 500만원 / 항공비 별도)
- ⑤ 장기해외연수생의 지원 기간은 15일 초과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⑥ 연수 참가 전 계획서, 지원비 신청서, 세부일정표, 서약서를 제출하고, 연수 참가 후 결과보고서 및 여권사본(또는 출입국증명서)을 제출해야한다.

제3조(해외석학초빙) ①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하여 해외석학을 초빙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 ② 해외석학은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이어야 한다.
- ③ 해외석학초청을 희망하는 참여교수는 사업팀에 신청하고 사업팀장은 연구분야와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 ④ 초청 연구분야에서 저명한 해외석학(정교수급)을 초빙하며 단기(1개월 이내) 초빙은 학생을 집중지도하거나 공동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 ⑤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항공료 실비와 자문료 (\$300/1일), 체제비(숙박비 \$150/1박, 식비 \$50/1일)를 지원한다. [아래 표 참고]
- ⑥ 해외학자의 강사료는 한국과학기술원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아래 표 참고]

직 급 구 분	자 격 기 준			
	소속기관의직급 (기준 I)	교육.연구경력 (기준Ⅱ)	교육.연구경력 (기준Ⅲ)	전문가 경력 (기준Ⅳ)
A급	교수, 책임급연구원(8호 이상), Research Leader	박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6년 이상	16년 이상
B급	부교수, 책임급연구원(7호 이하) Senior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4년 이상	석사학위취득후 10년 이상	10년 이상
C급	조교수, 선임급연구원, Researcher	박사학위취득후 즉시(박사학위취득 예정자포함)	석사학위취득후 5년 이상	5년 이상

국외 전문가 자문료		
구 분	자 문 료(일) [단위:\$]	비 고
A 급	300 이하	제세포함
B 급	250 이하	"
C 급	200 이하	"

초빙 강사료		
구 분	금 액 [단위:천원]	전 결 범 위
일 반	500 이하	소속 부서장
특 별	500 초과 ~ 1,000 이하	소속 학부의 장 또는 처장급 부서장
	1,000 초과 ~ 1,500 이하	학장
	1,500 초과	부총장

제 7 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1조(사업비 관리) ①사업팀의 수입과 지출은 한국과학기술원 중앙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사업비 집행에 따른 거래증빙은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인건비, 전문가활용비, 성과급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BK21 플러스 연구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지연 등 BK21 플러스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과제통합 연구비카드 사용을 인정한다.

④ 질병 수퍼 네트워크 사업팀 자체 운영 규정 외의 사업비 집행 관리는 「BK21플러스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을 따른다.

- 제2조(실험실습지원비) ①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시약 및 내구성 1년 이하의 소모성 재료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S/W 구입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② 기자재 및 시설비, 장비 구매 및 유지 보수비,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매는 할 수 없다.
- ③ 해외에서의 재료비 집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 제3조(사업단 운영비) ① 인건비는 사업단 소속 업무전담 행정직원 인건비로 사용하며, 퇴직금 및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을 집행 할 수 있다.
- ② 국내여비는 한국과학기술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③ 회의비는 한국과학기술원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 ④ 국내전문가 자문료는 1일 200,000원 이내로 정한다.
- ⑤ 자체 운영 규정 외의 사업단 운영비는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을 따른다.